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.

발 의 자 : 우재준 · 조지연 · 서천호
김기현 · 고동진 · 김위상
김소희 · 강명구 · 김태호
김형동 · 진종오 · 구자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,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,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,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·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

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10조의2
및 제11조의2).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”을 “건설기계를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건설기계”를 “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3호부터”를 “제3호,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”로, “전기자동차,”를 “전기자동차, 전기이륜자동차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. 다만, 같은 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.

다만, 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.

3의2. “전기이륜자동차”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를 “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10조의3,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

5까지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제11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1항 중 “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”를 “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1항에 따라 개방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이륜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이 경우 이를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자동차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<u>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u>	1. ----- ----- ----- <u>건설기계를</u> -----.
가. 「 <u>자동차관리법</u> 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	가. 「 <u>자동차관리법</u> 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. 다만, 같은 호 본문에 따른 <u>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.</u>
나. 「 <u>건설기계관리법</u>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건설기계</u>	나. ----- ----- <u>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</u>
2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<u>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</u> 에 따른 <u>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</u>	2. ----- <u>제3호,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-</u> ----- <u>전기자동차, 전기이륜자동차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
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
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
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
동차를 말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3. “전기자동차”란 전기 공급원
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
지를 동력원(動力源)으로 사
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 <단
서 신설>

<신설>

4. ~ 10. (생략)

제10조의2(공공기관의 환경친화
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) ①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
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「지방
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다
만, 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하
다.

3의2. “전기이륜자동차”란 「자
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5
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
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
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
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.

4. ~ 10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공공기관의 환경친화
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) ① --

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⑥
(생략)

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〈단서 신설〉

1. · 2. (생략)

⑧ ~ ⑩ (생략)

⑪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

-----환경친화
적 자동차(전기이륜자동차는
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10조
의3,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
까지에서 같다)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⑥
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, 다만, 제11항
에 따라 개방된 환경친화적 자
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
기이륜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⑧ ~ ⑩ (현행과 같음)

⑪ _____
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 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환 경친화적 자동차 <u>충전시설을</u> <u>개방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</u> <u>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</u> <u>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</u> <u>공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u> ⑫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충전시설을</u> <u>개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</u> <u>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 이용</u> <u>하게 할 수 있으며, 개방하는</u> <u>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</u> <u>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</u> <u>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 ⑫ (현행과 같음)
---	---